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9 발의연월일: 2025. 4. 2.

발 의 자:유상범·곽규택·정점식

장동혁 • 박준태 • 조배숙

박형수 · 김기현 · 김미애

고동진・조정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누적 체불임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총 28만 3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증가하였음.

임금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기반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재처럼 형사와 민사사건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 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죄(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5조(배상명령) ①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			
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			
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			
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			
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			
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			
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근로기준법」 제109조에</u>		
	<u> 규정된 죄(제36조, 제43조, 제</u>		
	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u>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u>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u>죄</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